

중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소재 불명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재 확인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시재생과-6595(2025.06.12.)호로 시행한 소재불명의 토지등소유자 수 제외 세부기준에 따라 등기 발송(2회)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중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소재 불명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재 확인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4. 14. ~ 2026. 4. 28. (초일불산입, 14일간)
3. 공고장소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관련법규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4호
5. 공고대상

물건	수취인	주소	공시송달 사유
의정부동 128	배*철	의정부시 의정부동 ***	주소불명
의정부동 117	이*근	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**번길 **-(의정부동)	주소불명

6. 공고대상 :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(☎031-828-8845)

2026년 4월 14일

의 정 부 시 장